

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(발주서방식 및 발주서전환방식)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 (발주서방식 및 발주서전환방식)</p> <p>제 1 조(목적) ~ 제 7 조 (매출채권 확정 등) (기재생략)</p> <p>제 8 조 (채권양도 및 양도승낙) ①~② (기재생략)</p> <p>③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,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보유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(기재생략)</p> <p>제 9 조 (매출채권 대금의 지급) ~ 제 15 조 (특약사항) (기재생략)</p>	<p>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 (발주서방식 및 발주서전환방식)</p> <p>제 1 조(목적) ~ 제 7 조 (매출채권 확정 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8 조(채권양도 및 양도승낙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9 조 (매출채권 대금의 지급) ~ 제 15 조 (특약사항) (현행과 같음)</p>	<p>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삭제</p> <p>체상</p>

2. 개정 시행일: 2019년 7월 4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